제303회 고성군의회(임시회)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

❑ 관계법령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(임시회)

❍ 「고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

❑ 회　　기: 2025. 7. 15.(화) ~ 7. 24.(목) (10일간)

❑ 개회일시: 2025. 7. 15.(화), 10:00(개회식 직후 개의)

❑ 집회절차

❍ 재적의원 1/3이상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소집

❍ 집회 공고(집회일 3일 전까지)

❑ 주요 처리안건

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

❍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❍ 조례안 등 일반 안건

4. 의사일정(안):　붙임

제303회 고성군의회(임시회) 의사일정(안)

▣ 기간: 2025. 7. 15.(화) ~ 7. 24.(목)〔10일간〕

일 시	구 분	처 리 안 건	비 고
7. 15.(화) 10:00	본회의 (제1차)	❑ 개회식 1. 제303회 고성군의회(임시회) 회기 결정의 건 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.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.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.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. 휴회의 건	*기획행정위원장 결과보고 *산업경제위원장 결과보고 *군수
7. 16.(수)	의회운영위원회(1차)	1. 조례안 등 안건심사	
	기획행정위원회(1차)	1. 조례안 등 안건심사	
	산업경제위원회(1차)	1. 조례안 등 안건심사	
7. 17.(목)	의회운영위원회(2차)	1.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	
	기획행정위원회(제2차)	1.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	
	산업경제위원회(제2차)	1.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	

일 시	구 분	처 리 안 건	비 고
7. 18.(금)	기획행정위원회 (제3차)	1.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	
	산업경제위원회 (제3차)	1.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	
7. 19.(토) ~ 7. 20.(일)		○ 휴 무 일	
7. 21.(월)	기획행정위원회 (4차)	1.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	
	산업경제위원회 (4차)	1.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	
7. 22.(화)		심사보고서 작성	
7. 23.(수)	예산결산특별위원회 (1차)	1. 위원장 선임의 건 2. 부위원장 선임의 건 3.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	
7. 24.(목) 10:00	본회의 (2차)	1.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 2.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	*상임위원장 결과보고 *예결특위위원장 결과보고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참고 **관련 법령 및 의회 규칙**

❑ 지방자치법

제54조(임시회)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· 사무국장 ·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· 사무국장 · 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❑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

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① 의장은 개의일시・제출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.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.

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.